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4581
등록일자	2016.4.7.
결재일자	2016.4.1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기획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★구청장
도순심	김창수	권순우	한수경	황치영	04/11 최창식
협 조	주무관	서채원	총무과장	김종석	
	의회법제팀장	이창하			
	의약과장	이은주			
	건강관리과장	신용준			

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계획



기획재정국
기획예산과

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계획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고, 구의회사무과 위임사무 중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함

I 개정 이유

-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「마약취급에관한 사무」, 「의료법인에관한 사무」 「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무」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기에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그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필요
- 구의회사무과 위임사무 중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등 정비

II 개정 내용

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개정 사항

구분	사무명	변경 사유
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 ○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사무 ○ 약국 사무 일부(등록증 갱신·재발급, 약국외 장소 판매승인, 포상금 지급) ○ 의료기기 사무 일부(신고증재발급, 지위승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업무 또는 업무효율을 위한 권한위임 필요업무 추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○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사무 ○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○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상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군구청장 업무로 권한변경되어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이동
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보수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법개정에 따른 삭제> ○ 의료기관에서 “진료비용 고지”로 전환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개정(기능직·계약직 → 임기제·일반직공무원) ○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 ○ 업무명칭 명확화 	

III

관련 법령

-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69조
- 의료법 제49조
-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1조, 제53조, 제54조, 제62조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(사무의 위임 등)
-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

IV

추진 일정

- 성별영향분석 · 부패영향평가 · 규제사전심사 : 2016. 4월 중
- 입법예고 : 2016. 4. 20. ~ 5. 10 (20일간)
- 조례·규칙 심의회 상정 : 2016. 5월 중(예정)
- 구의회 제출 : 2016. 5월 중(예정)

V

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상급부서 사전협의 : 「마약취급에 관한 사무」 「의료법인에 관한 사무」 「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무」 재위임 승인
【보건의료정책과-5946(2016.02.23.)】

붙임 :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(신구조문 대비표 포함). 끝.